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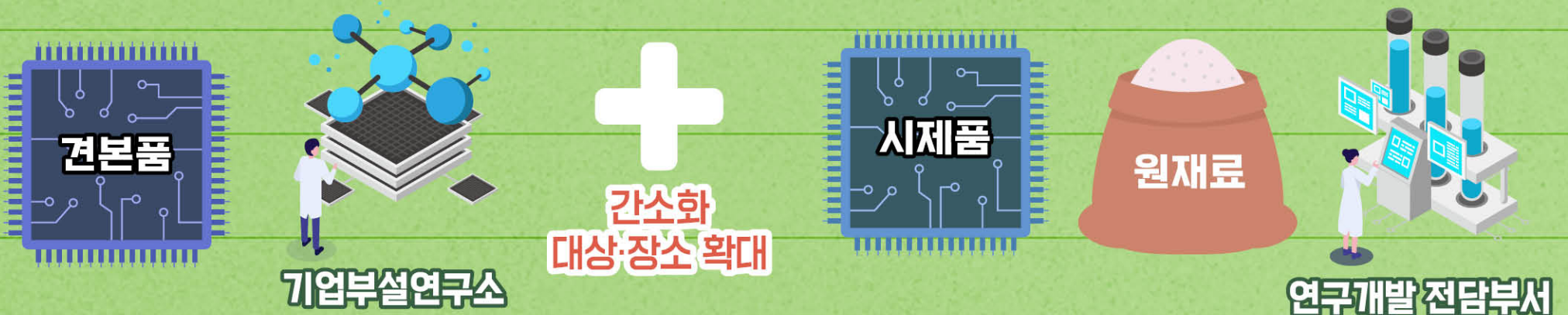
시제품·연구·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

종 전

- 연구·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(제29조의2)
- *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·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함
- [대상] 견본품
- [장소] 기업부설연구소

달라지는 내용

- 간소화 대상과 장소 확대
- [대상] 원재료·시제품·견본품
- [장소] 기업부설연구소
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



〈 사례 〉

개정전	· 자율관리보세공장 S사는 연구용품·시제품 을 연구·개발부서로 반출 시 수입통관 을 거쳐야 해서 연구·개발·검증 지체 및 제조 공정 지연
개정후	· 연구개발 전담부서 도 물품 반출입이 간소화되면서 시험·연구, 신제품 개발, 불량 원인 분석 대응이 빨라짐 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

기대효과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·시제품 등의 **시험·연구**와 **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**, 불량 등 발생 시 **신속한 원인 규명** 및 **대응 가능**

시행일 '25. 2월 시행 예정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9조의2 개정)

02

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

종 전

□ 잉여물품의 재고관리(제33조)

· <신설>

달라지는 내용

□ 내·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잉여물품의 재고관리 방법 완화

- 다음 각 호의 잉여물품에 대해 내·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에 기록·관리하는 방식으로 보관 또는 반출입 허용
- 설계도면 등에 의해 정확한 손모중량 산출이 가능한 비금속(卑金屬) 원재료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으로서 기본 관세율이 0%인 것(설계손모량에 따라 중량 관리)
- 원재료·제품에 전용된 후 재사용하지 않는 포장·운반 용품·용기로부터 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(내·외국 원재료의 혼용 중량 비율에 따라 중량 관리)



< 사례 >

개정전	· 보세공장 H조선사는 원재료 포장박스과 절단작업 후 발생하는 철강 스크랩의 수입통관을 위해 각각 별도 장소에 내·외국물품을 구분 보관 하면서, 전 공정에서 내·외국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해 옴
개정후	· 이번 규제혁신으로 한 장소에서 내·외국 구분없이 통합 보관·관리 하고 설계손모량 등에 따른 중량으로 수입신고 함에 따라 공간활용, 비용절감,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생산 속도도 향상 됨

기대효과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**내·외국 구분 관리 부담 해소**로 **작업 효율성 향상, 인건비 절감, 공간활용, 신속 제조 가능**

시행일 '25. 2월 시행 예정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3조 개정)

03

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·대상 확대

종 전

- 사전심사 신청대상 제한
 -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·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

달라지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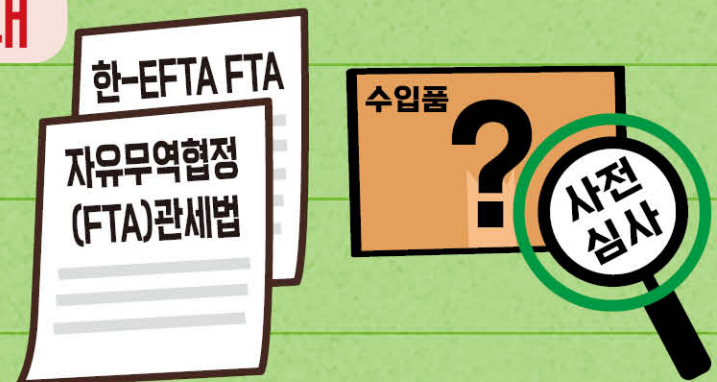
- 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
 -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
 - * [협정] 한-EFTA FTA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
 - * [대상] 「FTA관세법」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대상 항목 7개에 대해 협정과 관계없이 전체 신청가능하도록 허용

기존



사전심사제도 없음 → **신청불가**

확대



자유무역협정(FTA)관세법에 근거
사전심사 신청 가능

〈 사례 〉

개정전	· 국내기업 A사는 스위스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통관하며 한-EFTA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고 싶었으나, 해당 협정에는 원산지 사전심사가 규정되지 않아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함
개정후	· 한-EFTA FTA에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, A사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스위스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이 한-EFTA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가능

기대효과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,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 관련 법적안정성 제고

시행일 '25. 1. 1. 시행[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제31조 개정]

04

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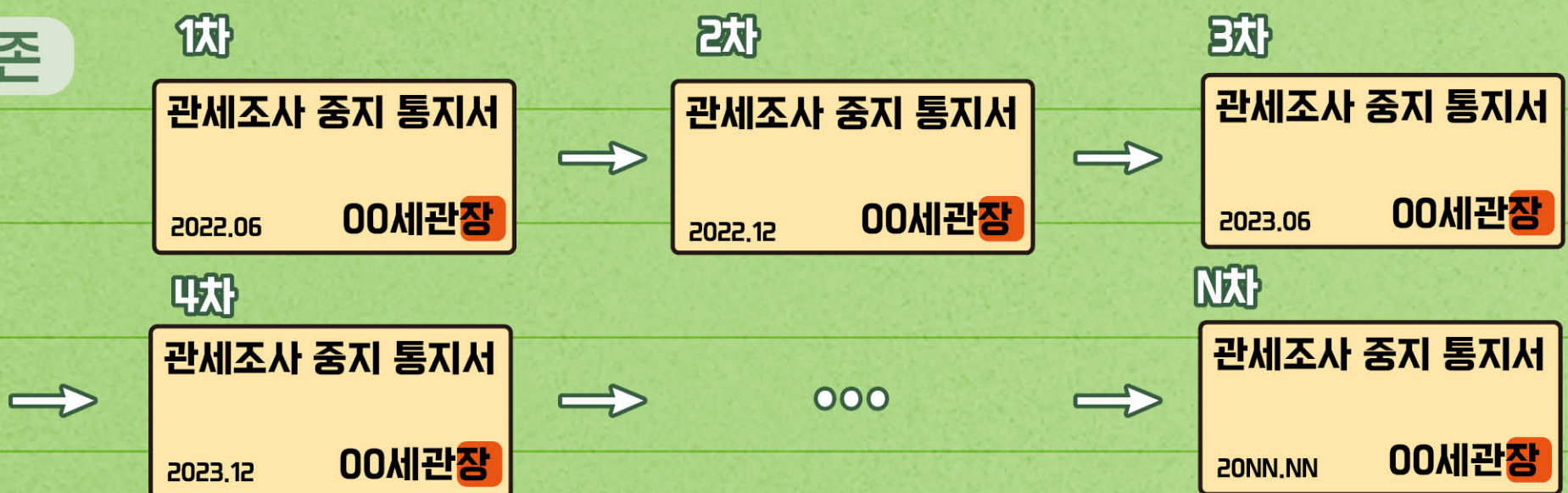
종 전

- 관세조사 중지(훈령 제36조)
 - 관세조사 중지 시 중지 횟수에 관계 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

달라지는 내용

-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
 -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 [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]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

기존



변경



기대효과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

시행일 '25. 1. 1. 시행 [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36조제1항]

05

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

종 전

- 협정관세 사후적용* 신청 대상
 - *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율 적용
 - 【원칙】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
 - 【예외】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
 - < 신 설 >

달라지는 내용

-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
 - [※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]
 - 수입자가 「관세법」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

신설



< 사 례 >

개정전	· S사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,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불가
개정후	·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S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수정신고 한 날부터 45일 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

기대효과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

시행일 '25. 1. 1. 시행
[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 개정]

06

RCEP 수출자·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

종 전

- RCEP 원산지증명 방식
 -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
 -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
 - <신 설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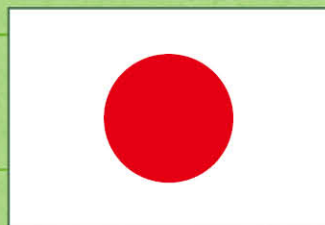
달라지는 내용

- RCEP 원산지증명 방식 추가
 - [좌 동]
 - [좌 동]
 - 수출자·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
 - [대상 회원국] 한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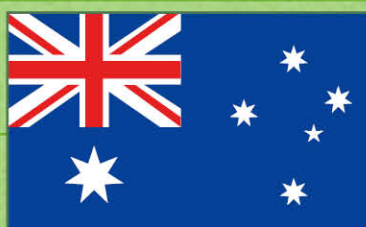
대상 회원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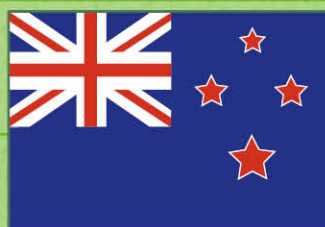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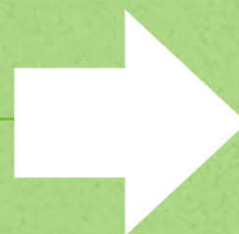
일본



호주



뉴질랜드



자율 증명 가능



수출자·생산자

< 사 례 >

개정전	· 일본에 신발을 수출하는 S사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
개정후	· 일본에 신발을 수출하는 S사는 수출자 스스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작성·발급하여 일본 수입자에게 제공

기대효과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

시행일 '25. 1. 1. 시행[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의2 신설]



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

종 전

-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(제177조)
 - 외국물품: 1년 범위 + 1년 연장 가능
 - 내국물품: 1년 범위

달라지는 내용

-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
 - <현행과 같음>
 - 1년 범위 + 1년 연장 가능

기존



1년만 장치 가능

확대



1년 장치 후 1년 연장 가능

< 사례 >

개정전	· B사는 냉동 육류를 수입·유통하는 회사로 냉동창고 1곳을 특허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, 특허 보세창고 내 여유공간에 냉동 조기 등 내국물품도 함께 보관 보관하고 있음,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므로 냉동조기를 1년마다 다른 냉동창고로 반출 후 재장치하는 사례 발생
개정후	· B사는 내국물품의 냉동조기 등 장기 장치 수요가 있는 냉동물품을 보세창고 반출 없이 장치기간 연장 신고만으로 계속 장치 가능

기대효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및 창고의 탄력·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물류산업 지원

시행일 '25. 1. 1.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(「관세법」개정)

08

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

종 전

-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
 - [원칙] 부족세액의 10%
 - [예외] 부정 과소신고*시 40%
 - *①허위증명 ·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
 - ②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
 - ③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·은폐
 - ④그 밖에 포탈,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
- [무신고] 해당 관세액의 20%
- [밀수입죄로 처벌시] 해당 관세액의 40%

달라지는 내용

- 가산세율 상향
 - <현행과 같음>
 - 부족세액의 40 → 60%
 - <현행과 같음>
 - 해당 관세액의 40 → 60%

상향

부족세액
40% → **60%** 가산 부과



부정 과소신고

관세세액
40% → **60%** 가산 부과



밀수입죄

기대효과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제고

시행일 '25. 1. 1. 시행[「관세법」 제42조 개정]

09

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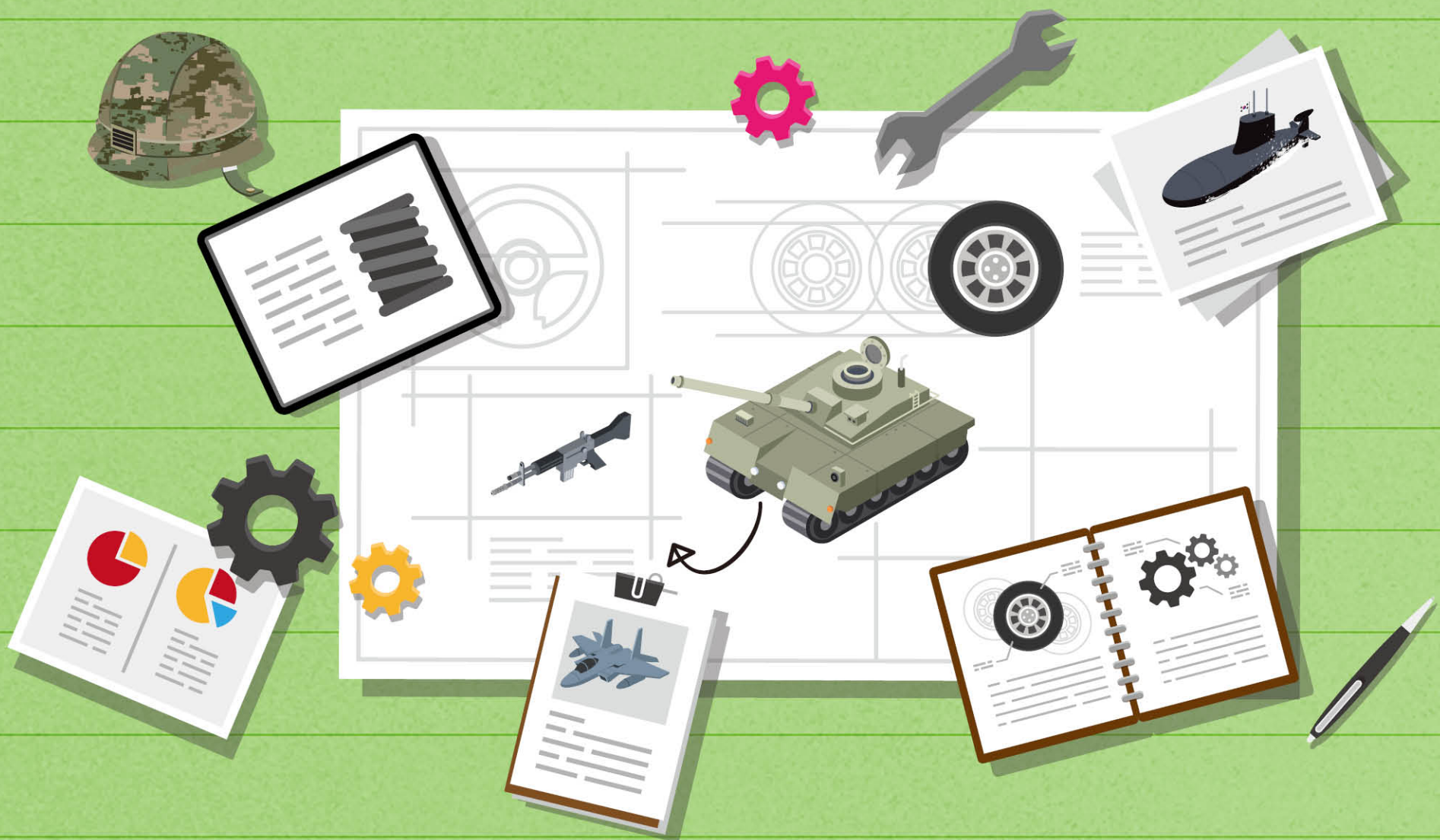
종 전

-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제한(제235조)
- <신 설>

달라지는 내용

-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
-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에 따른 방위산업기술

신설 방위산업기술 추가



기대효과 지식재산권 등(방위산업기술)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통관보류 또는 유치 가능

시행일 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35조 개정)



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

종 전

-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 및 처벌내용
[제275조의3]
- 처벌 대상
 < 신 설 >
- 처벌형량
 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
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달라지는 내용

-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
- 처벌 대상
 - 타인명의 사용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
- 처벌 형량
 - 타인명의 사용 : 2년 이하 징역 또는
 2천만원 이하 벌금
 - 자신의 명의사용 허락 : 1년 이하 징역 또는
 1천만원 이하 벌금



기대효과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해외직구에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

시행일 '25. 1. 1. 시행[「관세법」 제275조의3 개정]